「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개정(2004.1.29)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기관이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되고,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필요성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여건, 위기가정 상담전화 통합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고시를 현행화하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에 112번을 추가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2번 가)
-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 응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노인학대사 례를 응급사례와 비응급사례로 구분하고 비응급사례의 경우 현장조 사를 '48시간 내"를 "72시간 내"로 변경하고 자함(안 4번 다)
- 다. 노인학대예방사업 관련 기관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6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별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9호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보건복지부장관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긴급전화운영의 가. 중 "129번 또는 1577-1389번"을 "112, 129번 또는 1577-1389번"으로 한다.
- 4. 노인학대 상담 등의 다. 중 "단순노인학대사례는 48시간 내에"를 "비응급사례는 72시간 내에"로 하고,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및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 6. 기타 중 "노인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업무수행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긴급전화 운영	2. 긴급전화 운영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2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
<u>9번 또는 1577-1389번</u> 으로 한	<u>12, 129번 또는 1577-1389번</u> 으
다.	로 한다.
긴급전화 사용요령	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u>12</u>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u>9번 또는 1577-1389번</u> 만을 눌러	<u>112, 129번 또는 1577-1389번</u> 만
사용한다. 이동전화(핸드폰)로	을 눌러 사용한다. 이동전화(핸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
	와 같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4. 노인학대 상담 등	4. 노인학대 상담 등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
조토록 하고, 단순노인학대사례	조토록 하고, <u>비응급사례</u> 는 <u>72</u>
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	<u>시간</u>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하여야 한다.	야 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
수한 <u>노인학대예방센터</u> 에서 12	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12
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u>시</u>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

현 행

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 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사례 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 다.

라. (생 략)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u>노인학대예방센터</u>업무 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 다.

개 정 안

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u>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행정</u> <u>복지센터</u>의 사회복지전담공무 원에게 협조하여 사례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u>노인보호전문기관</u>업무 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 다.